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. 3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립의 각급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을 추가함.(안 제1조)
- 나.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를 업무주무자로 함.(안 제8조, 제9조)
- 다.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함.(안 제11조)
- 라.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6조제4항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문 대비표 : 붙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
- 입법예고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”으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중 “서무주무자”를 각각 “업무주무자”로 한다.

제11조중 “물품당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”을 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”으로 한다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충청북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조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<u>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</u>의 취득, 보관, 사용,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----- ----- <u>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8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물품을 매입, 수리,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(주관과장이 없는 청·소는 <u>서무주무자</u>)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, 수리,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----- ----- ----- <u>업무주무자</u>)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(물품매입요구의 심사) ①주관과장(주관과장이 없는 청·소는 <u>서무주무자</u>)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9조(물품매입요구의 심사) ①----- ----- <u>업무주무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정안
<p>제11조(중요물품의 범위)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<u>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</u>으로 한다.</p>	<p>제11조(중요물품의 범위) ----- ----- -- <u>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</u> -----</p>
<p>제16조 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③(생략)</p>	<p>제16조 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④<u>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발췌서

□ 초·중등교육법 (법률 제7120호 2004. 1. 29)

제30조2 (학교회계의 설치) ①국·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.

□ 지방재정법 (법률 제7159호 2004. 1. 29)

제104조 (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8044호 2003. 6. 30)

제6조 (교육·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 이 영에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"지방자치단체의 장" 또는 "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"은 "교육감"으로, "행정자치부장관"은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, "행정자치부령"은 "교육인적자원부령"으로 본다.

제130조 (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)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.

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5년 2월 22일

제안자 :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, 조문 내용에 표현된 용어상 직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8조 중 “행정주무자” 를 “업무주무자”로 하고
- 안 제9조 제1항 중 “행정주무자” 를 “업무주무자”로 함

3. 수정안 : 따로 붙임.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.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8조 중 “행정주무자”를 “업무주무자”로 하고,
- 안 제9조 제1항 중 “행정주무자”를 “업무주무자”로 한다.

